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

내 용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「장애인연금 사업안내」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다만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¹⁾에게는 장애수당²⁾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충청남도 천안시, 보령시, 예산군 등 7개 시·군의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, 아래 [표]와 같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61명의 장애인에게 1~58개월간 21,240,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.

[표]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(2017. 10. 30. 기준)

(단위 : 명, 원)

시/군	합계		장애수당(기초)		장애수당(시설)		장애수당 (기초/시설)	
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계	61	21,240,000	38	13,280,000	17	5,600,000	6	2,360,000

1)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경증장애인(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)

2) 장애수당(기초): 2013~2014(3만원/월), 2015~2017(4만원/월) / 장애수당(시설): 2013~2017(2만원/월)

시/군	합계		장애수당(기초)		장애수당(시설)		장애수당 (기초/시설)	
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천안시	9	1,280,000	9	1,280,000	-	-	-	-
공주시	22	8,500,000	16	6,360,000	5	1,400,000	1	740,000
보령시	2	300,000	-	-	1	80,000	1	220,000
아산시	19	6,260,000	10	4,040,000	5	820,000	4	1,400,000
서산시	6	3,140,000	2	680,000	4	2,460,000	-	-
예산군	1	220,000	-	-	1	220,000	-	-
태안군	2	1,540,000	1	920,000	1	620,000	-	-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,28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공주시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8,50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보령시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30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아산시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6,26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서산시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3,14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예산군수는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2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충청남도 태안군수는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,540,000원을 추가 지급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